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공주시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및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원(2013년은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산모에 대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수급 자격을 가진 산모에 대해서는 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동일인에게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와 해산급여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와 해산급여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수급자가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해산급여 포기각서를 징구토록 하는 등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상호 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미지원자에 한해 산모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충청남도 공주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타 사업에서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동일인에게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와 해산급여를 중복 지원하였다.

[표] 산모신생아 서비스 및 해산급여 중복 지급 현황

(단위 : 원)

시/군	수혜자	생년월일	해산일	산모도우미 서비스시작일	해산급여 지급일	해산급여 지급액	산모 신생아
공주시	○○○	○○○○. ○○.○○	○○○○. ○○.○○	○○○○. ○○.○○	○○○○. ○○.○○	600,000원	594,000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공주시장은

[시정] ○○○에게 중복 지급된 해산급여 600,00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